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12월 1일  
행정재경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0일, 도병두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2년 11월 10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12월 1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도병두 의원)

### 가. 제안이유

-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침해 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안 제4조)
-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안 제6조 및 제7조)
-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9조)

- 협의체 구성·운영 및 민간협력(안 제10조 및 제1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병규

#### 나. 검토의견

##### ① 주요 제정 내용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 안 제4조에서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대해 규정함.
- 안 제8조에서는 공익신고 기록 및 관리에 대해,
- 안 제9조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대해 규정함.
- 안 제10조에서는 공익신고 활성화와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규정함.
-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및 포상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안 제14조에서는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함.

##### ②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1조 목적에서 제16조 시행규칙까지 16개의 조문과 4개의 별지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익신고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분야에서 부패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자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최근 복잡하고 다양해진 행정환경으로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적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공익신고는 양심에 따라 사회 문제에 대해 고발하는 용기있는 행동으로, 이를 권장하고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정의 실현과 건강한 시민사회 구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